



# 기안용지

분류기호 432.4 - (전화번호 342) 정결규정 조항  
 문서번호 정결사항

처리기간 결재자  
 작 2 부 시작 시 장

시행일자  
 보존년한  
**공고제 38호**

보조기관  
 도시 계획국장  
 환경과장  
 환경 1 과장  
 협조  
 환경 2 과장  
 환경 3 과장  
 정지 과장  
 계획과장  
 서무과장  
 시민과장  
 법무과장 (공안과장)

기안책임자 허정현 71. 11. 10

경유 수심 참조  
 구안 참조  
 발송  
 동 제

제 목 영동모 지구환경리사업 변경실시 계획공고

제 1 안 내부 결재

1. 건설부 공고 제 8호 (68. 1. 18) 및 제 12호 (69. 11. 28) 로 인가 및 변경 인가된 영동 모 지구환경리사업 에 있어서,

2. 당시 시공중인 강변 도로 주변 지역을 면이 개발로 제 건설부 공고 제 113호 (70. 10. 2) 로 추가 사업시행명령을 받아, 당초 인가된 지역과의

면의사항 및 변경된 계획사항등의 변경 변경 조치를 하고자 사업면적 14조

및 제 33조 규정의 외하여 우선 관계로 지소유자의 개수권과의 관계가

고자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 2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38호

020-1-1A

1969. 11. 10. 승인

190mm x 245mm 백 색 지 60g/㎡

(서울특별시청 공자 제 100호 1969년 11월 10일)

128  
 18-1

35

**제목** 영동부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실시 계획공고

부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거 당시가 실시하고 있는 영동부지구획정리사업지구  
구내의 사업실시 계획중 일부를 별첨 도서와 같이 변경 실시계획을 정하고 동지구  
획정리사업법 제 14조 및 제 35조 규정이 의하여 공고함으로써 14일간 동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류에 국한하지 아니 관계인의 많은 의견 청취를 바랍니다.  
관계 도서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관지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971. 2. .

서울특별시장

**변경 내용**

지구명	면적	변경면적	면적된 동명	비고
영동지구	4,723,776.70㎡	5,128,091㎡	잠원동, 반포동 양구정동.	강변 5로 주변지역
		(404,313.30)	추가면적	

본 공고에 내한 토지소유자에게 서류 송달은 별도 발송되는바 미 수령되  
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대신합니다.

제 3안

수신 수신처 주소 발신 시장

제목 동 계

건설부 공고 제 9호 (69. 1. 18) 및 제 120호 (69. 11. 22) 후 인가된  
영동부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별첨 공고분과 같이 변경 계획이 수립되었거 관계  
통반을 중핵이 관계인에게 주지 시해기 바람.

첨부 . 공고는 사본 1 부 .

수신처 . 영동부구청장 . 성동구청장

제 4안

수신 공보실장 ( . . . . . ) 발신 . 과 . 장 .

제목 동 건

별지 공고문과 같이 공고 하였으므로 시보 및 서울 뉴스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1부.

제 5안

수신 수신처 참조 (별지 토지대장 소유자) 발신 시장

제목 동 건

1. 귀하의 토지는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명령 (건고 113호)을 발령 시행하고 있는 영등포지구 확장미지구에 편입 시행하고자,
2. 우편 공고문과 같이 변경 계획 수립되어 사업비에 의한 공람이 공한 것이 통보하오니 많은 중람과 마의견 제출 있으시길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환지과에 비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 지 목록

동	명	지	번	면	적	비	고

함.

B-3

서울특별시

#125

서울특별시립 삼성청년문화회

37

### 영양 도시 계획상의 사업시행 계획 (안)

제1호 (목적) 도시계획 사업으로 1967. 12. (건설부령 제6호) 서울특별시장이 시행을 명령한 도시계획상의 사업은 도시 계획상의 사업법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2호 (지구별의) 이 지구는 도시 계획상의 지구라 칭하고 지구의 ~~내~~ 동명 지번은 별책에 의한다.

제3호 (사업비) 이 사업의 재원은 지구내 도시채우자로부터 제공한 채비지 매각대익, 보조금, 기타 점수함으로 충당 할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여 보충한다~~ 한다.

제4호 (종전 도시) 현시 교부의 종전이 될 종전 도시의 각 필의 면적은 별 제 33조 종전일 현재 도시 대장 및 입주대장 편제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여 별도로 실취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

제5호 (평정가격) 정리전후의 도시 각 필의 평정가격은 그 위치, 형상, 면적, 고저 간층, 지가 수익, 교통 환경등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하여 ~~환산자료에~~ <sup>한시 환산에</sup> 의한다.

제6호 (도시사용)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구내 도시를 사용할수 있다.

제7호 (도시의관리) 서울특별시장이 현시 비정자를 지정하고 관리

안로써왔을시에는 투자소유자는 한지에 권리를 우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공영 및 분할) ① 사업기간에 한지에 대한 공영 및 기타 증명서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영 투자 및 한지의 변경 및 분할은 공공 계획에 의한 것 외에는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발급 또는 변경한다~~

제9조 (한지계획의 기준) ① 분지구의 한지 계획은 ~~본시정~~ 구의에 의하고 ~~제48조~~ 내지 제54조 규정과 다르며 한지로서 ~~모두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표준으로 하여 종전도지 위치 ~~기준~~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용지 및 채비지 지정으로 인하여 권리면적에 지원할 수 없으려는 권리주권자 이한 위치와 대수라든 인정되는 위치도 비 한지 지정한다.

③ 실지 계획 공인일 현재 공공용에 의하고 있는 투자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①항 규정이 불구하든 증환지 또는 감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지 사유지대에 대하여는 권리면적보다 초과한 면적은 전 제5조 당원자적에 의하여 증원으로 갈수한다.

④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모두할 한지면적이 ~~적용~~하여 그 부족을 달성할 수 없어 증환지 신청이 있을시엔 특별히 증환지를 모두할 수 있으며 전항

이하에 공한리 가져올 수 있도록 정한다.

(5) 기존 건물에서 전면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최소한 면도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  
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평면폭원의  $\frac{1}{2}$ 를 면도부담으로서  
부담한다.

(6) 기존 건물에서 주변 건물과의 이격이 소정 도로가  
확장되어 건물주체를 내 변경하지 아니하든한 수익을 다할수  
있으나 인정되는 토지의 면도부담을  $\frac{1}{2}$ 로 감한다.

(7) 기존 건물이 주변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리가  
심하여 현지의 수익에 지장이 ~~있다~~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면도부담을  $\frac{1}{2}$ 로 감할수 있다.

상변 도로에 의하여 제외지 및 제내지에 위치한 (주거지역)  
사유지는 (8) 서울특별시 상공이 정한 바에 의하여 영등기취득이 구분  
하여, 판지기준을 적용 제내지에 대한 지를 정할수 있다.  
제10조 (특별지역 환지계획) ① 공권 토지의 지적 또는 행정  
이 관하여 환지가 유효하지 미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급원으로 환산할수 있다.

(9) 전환의 급원 환산에 의한 처분  
방법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환지 예정지 지정) 별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조치하였을 시에는 이를 공인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 및 임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또한 같다.

제12조 (정산) 환지 예정지가 지적되면은 환지 공할때반에

대한 가 정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수 있으며 환지처분금으로  
있으면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 13조 (정산기준) 환지 처분이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정산금액은 환지로 교부할 전라면적나 환지면적나  
차에 환지의 평균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 14조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을시를 원칙  
으로 하나 일부 완료지역 또는 사업종결에 결판산 부유  
한 경우에는 공사중이라 할지라도 환지 처분을 할수도 있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5조 (재비지의 관리 처분) 사업경비에 준할 단말 재비  
지가 정하여지면 서울특별시장의 따로 정하는 규정이  
의하여 관리 처분한다.

제 16조 (등기 완료후의 등지) 서울특별시장은 등지구획권리  
의 등기 종료되었을 때에는 환지 설명서의 조분, 지가  
배부가 종료되었을 때는 지가 배부서의 조분을 전부하여  
등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대리인 제출) 등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때에 시내에 거주하는자를 대리인으로  
명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

제 18조 (등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변의신고) 등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주 및 전항이 신고를 하지 아니할

생한(生) 손(損)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9조 세칙(附則) 이 조항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항은 이 시행시행 실시인가일로 부터 시행한다.

18-8

128

42



재 원 조서  
영동포지 위탁 정리 사업

좌측: 변경부  
( )는 실적

—금 6,215,000,000 원정  
내역

종별	금액	FY 68	FY 69	FY 70	FY 71-74	비고
기재	( )	1,200,000,000	( ) 70,000,000	( ) 300,000,000	( ) 600,000,000	
추진보조	(596,600,000) (2,446,000,000) (250,000,000)	1,878,048,000	950,000,000	600,000,000	( ) 328,048,000	
시보조	450,000,000			250,000,000	200,000,000	
재보지 계약대	(1,338,490,000)	2,604,951,800		(1,000,079,500)	(4,678,300,000)	
분담금	100				100	
청산수입	5,000,000				5,000,000	
기타	100				100	
계	(6,215,000,000)	6,215,000,000	950,000,000	900,000,000	(1,000,000,000)	(4,678,300,000)

호지 기획정리 사업 투입 예산서

적자: 변경주

수입 - 금  
지출 - 금

6,288,000,000  
6,215,000,000  
6,288,000,000  
6,215,000,000

투입내역

과 목		금 액	비 고
관	항 목		
기획정리비		6,288,000,000 6,215,000,000	
	1. 기 재	1,200,000,000	
	기 재	1,200,000,000	
	2. 보 조	5,018,000,000	
	국보 조	2,328,048,000	
	시보 조	594,600,000	
	3. 재비지 매각비	1,878,048,000	
	재비지 매각비	250,000,000	
	4. 분담금	608,349,500	
	5. 형사징수금	2,681,951,000	
	6. 징수금	100	
	7. 징수금	100	
	8. 징수금	5,000,000	
	9. 징수금	5,000,000	
	10. 징수금	100	
	11. 징수금	100	

18-10

130

지출부 내역  
라 목록

일자: 1982

관	항목	금액
구획 정리비		6,288,000.000
		6,215,000.000
		270,000.000
1. 사무비	사무비	200,000.000
		6,048,802.000
		200,000.000
2. 용사비	용사비	6,048,802.000
		5,422,802.000
		5,422,802.000
3. 영선비	영선비	4,000,000
		4,000,000
4. 시채이자	시채이자	563,140.608
		563,140.608
		5,194,500
5. 환손보류금	환손보류금	5,057,392
		5,198,600
		5,057,392
6. 예비비	예비비	20,000,000
		20,000,000

18-11

125

사업 시행년도별 총합표

23자: 6223  
23

비목	년도별 총 사업비	년 과 사업비 (세)			
		제 1연과	제 2연과	제 3연과	제 42~제 7연과
도시개발청리비	(244,000,000) 6,215,000,000	744,227,000 950,000,000	(370,233,400) 901,000,000	(730,765,600) 1,000,000,000	4,441,874,000 3,365,000,000
사구비	(210,000,000) 201,000,000	(1,165,000) 30,000,000	(9,526,400) 30,000,000	(48,969,600) 30,000,000	50,445,000 11,000,000
영선비	4,000,000	4,000,000			
공사고부금	(5,195,000) 5,057,392				5,194,000 5,057,392
기타이자	563,140,608		480,000,000	103,680,000	411,460,608
타.타.타	20,000,000		50,000,000	5,000,000	20,000,000 10,000,000
시상비	(148,402,000) 5,422,862,000	743,762,000 916,000,000	(260,707,000) 817,000,000	(682,012,000) 861,322,000	4,262,771,000 2,828,442,000

정리전후의 토지 이용도  
(정리전후 자투리 면적 집계도) 1973년 12월경

구분별	소유별	정리전		정리후					
		지목	면적	필수	용도	지목	면적	비고	
바	미유지	전	1,616,901 <sup>70</sup>	3,241					
		대	1,296,923 <sup>70</sup>	2,155					
		묘	1,614,646 <sup>70</sup>	2,581					
		묘	1,661,058	2,572					
		묘	1,821,117	991					
		묘	162,514	926					
		묘	200,291	222					
		묘	189,266	212					
		묘	18,273	67					
		묘	18,248	66					
		묘	513,044	544					
		묘	492,480	654					
		묘	211	2	택지	예	2,981,450 <sup>70</sup>		
		묘	산양	613,112	365	레버지	"	2,897,738	
		묘	천	1,680 <sup>70</sup>		도로	도	341,407	
묘	소계	4,750,047 <sup>70</sup>	7,976	수로	수	329,137			
		4,854,922	2,195	수로	대	940,773 <sup>50</sup>	1,129,744 <sup>50</sup>		
						61,410			
지	유지	전	8,201	21	시장	"	18,895		
		대	2,745	10	농지	농	47,237		
		묘	16,913	35	유수지	지	28,228		
		묘	2,822	16	주거	거	51,146	(중 19,307)	
		묘	1,402	7	임채교과	광	48,474		
		묘	2,790 <sup>86</sup>	12	배수장	대	4,842		
		묘	6,237	13	부지대	장	95,627		
		묘	32,194	90		장	9,914		
	소계	24,026	90						

	업 수 계	2,193 129,127 <sup>90</sup> 123,118 <sup>90</sup>	17 254 244			272,565.90 <sup>90</sup> 244,864 <sup>90</sup>
미 등 로 가	도 천 구 입 대	53,153 51,069 66,452 46,794 24,773 23,883 108	101 94 88 85 52 49			
	소 계	142,328 121,746	241 228			
	합 계	330,321 <sup>90</sup> 309,578	1,272 1,239			345,331 <sup>90</sup> 309,578 <sup>90</sup>
총 계		5,28,091 4,723,776 <sup>90</sup>	1,340 8,522			5,128,091 4,723,776 <sup>90</sup>

18-1x

~~130~~

134

서울 도시 계획 사업. 명동. 돈리. 구획정리지구

공사 설계서

구분: 변경구

- 2/10. 5.048.802.000 원  
5.422.802.000 원

18-15

135

40

지구공사 물량표

공사금

5,422,802,000 원정

취재: 변경주

공종	수량	단위	공사금액	비고
토공	41,148.248	M <sup>3</sup>	2,620,948,000	
	40,747.682		2,567,739,000	
수로용벽공	62.567	M	713,618,000	
	62.244		702,318,000	
유리	140	EA	7,539,000	
	142		7,135,000	
트랙	2,516	EA	2,811,000	
	2,273		11,774,000	
맨홀	18	개소	536,000	
기타유도물	1	식	42,783,000	
가옥보상	195	틀	132,310,000	
전주	325	주	9,929,000	
과목	49,061	"	56,343,000	
분포	4,034	기	11,887,000	
고속도로공사비	10,760	M	1,878,044,000	
일반도로공사비	3,128	"	560,000,000	(포장 및 보상비 포함)
계			(5,422,802,000)	
			5,422,802,000	



명칭 금액

총계	288,000,000 6,215,000,000
1. 사무비	210,000,000 200,000,000
2. 공사비	6,488,802,000 5,422,802,000
3. 경선비	4,000,000
4. 기타(이자)	563,140,608
5. 청산금	5,193,000 5,057,392
6. 예비비	20,000,000

18-17